

미주 및 유럽

# 미국 USA

---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61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177
03. 비관세장벽 현황	181
04. 수출 애로사항	197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200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미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 [ 용어 정의 ]



###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2년 미국 식품 시장규모는 9,089억 달러(한화 약 1,190조 6,590억 원)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신선식품보다 가공식품의 시장규모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3,985억 달러(한화 약 522조 350억 원)로 전체 식품시장의 43.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육류(13.3%)로 1,211억 달러(한화 약 158조 6,410억 원) 규모를 형성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의 56.2%에 해당하는 5,104억 달러(한화 약 668조 6,240억 원)로 집계되며,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높음
    - \* 2022년 스낵류(32.3%) 시장규모는 2,933억 달러(한화 약 384조 2,230억 원)로 집계됨
    - \* 그 뒤를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7.4%), 펫푸드(5.8%) 편의식품(5.7%), 소스 및 향신료(3.4%), 스프레드 및 당류(1.3%), 영유아용 식품(0.9%)이 뒤를 이음

### 미국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 <sup>22</sup> )	전년대비 증감률
<b>전체</b>	764.3	787.5	818.4	844.3	908.9	100.0	7.7
<b>신선식품</b>	339.9	350.4	361.4	371.5	398.5	43.8	7.3
- 육류	105.0	109.4	112.1	114.9	121.1	13.3	5.4
- 낙농품	79.9	82.0	85.0	87.5	94.3	10.4	7.8
- 채소류	71.5	73.4	75.9	78.1	86.0	9.5	10.1
- 과일 및 견과류	69.6	71.4	73.8	76.0	81.5	9.0	7.2
- 유지류	13.9	14.2	14.6	15.0	15.6	1.7	4.0
<b>가공식품</b>	424.4	437.1	457.0	472.8	510.4	56.2	8.0
- 스낵류	252.5	258.3	266.0	272.9	293.3	32.3	7.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8.9	60.0	61.6	63.0	67.5	7.4	7.1
- 펫푸드	30.5	34.2	42.1	46.9	53.0	5.8	13.0
- 편의식품	41.3	42.4	43.8	45.1	48.6	5.3	7.8
- 소스 및 향신료	24.8	25.4	26.2	27.0	29.0	3.2	7.4
- 스프레드 및 당류	9.3	9.5	9.7	10.0	10.9	1.2	9.0
- 영유아용 식품	7.1	7.3	7.6	7.9	8.1	0.9	2.5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3억 3,38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0.4%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도 전체 인구의 약 35.8% 수준임
  - 여성 인구 수는 1억 7,080만 명(50.5%), 남성 인구 수는 1억 6,750만 명(49.5%)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지만 성비가 균등한 편임
- 2022년 가구 수는 1억 3,59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5만 880달러(한화 약 6,665만원) 규모임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는 2021년 대비 7.8% 증가함
- 2022년 1인당 식품 연간 소비액은 총 2,714.8달러(한화 356만원)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이 신선식품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체 품목 중 스낵류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스낵류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875.9달러(한화 약 115만원)로 전체의 32.3%를 차지함
    - \* 스낵류(32.3%), 육류(13.3%), 낙농품(10.4%), 채소류(9.5%), 과일 및 견과류(9.0%) 순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액은 1,190.4달러(한화 약 156만원), 가공식품의 연간 소비액은 1,524달러(한화 약 200만원)로 집계됨
    - \* 전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상승세를 보임

미국 품목별 1인당 연간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b>전체</b>	2,336.2	2,393.4	2,471.9	2,535.4	2,714.8	100.0	7.1
<b>신선식품</b>	1,039.0	1,065.2	1,091.6	1,115.8	1,190.4	43.8	6.7
- 육류	321.0	332.6	338.5	345.0	361.6	13.3	4.8
- 낙농품	244.3	249.3	256.9	262.8	281.8	10.4	7.2
- 채소류	218.7	223.2	229.2	234.7	256.9	9.5	9.5
- 과일 및 견과류	212.7	217.1	223.0	228.4	243.4	9.0	6.6
- 유지류	42.3	43.0	44.0	44.9	46.7	1.7	4.0
<b>가공식품</b>	1,297.2	1,328.2	1,380.3	1,419.6	1,524.4	56.2	7.4
- 스낵류	771.9	785.0	803.5	819.7	875.9	32.3	6.9
- 편의식품	179.9	182.3	186.0	189.1	201.7	7.4	6.7
- 패스트푸드	93.2	103.8	127.1	140.9	158.4	5.8	12.4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26.4	128.9	132.3	135.3	145.1	5.3	7.2
- 스프레드 및 당류	75.8	77.2	79.2	80.9	86.6	3.2	7.0
- 영유아용 식품	28.4	28.8	29.3	30.0	32.5	1.2	8.3
- 소스 및 향신료	21.6	22.2	22.9	23.7	24.2	0.9	2.1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2022년 신선식품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낙농품, 채소류, 과일 및 견과류의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낙농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23.1kg이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 신선식품 중 전년 대비 소비량 증가율을 보인 품목은 채소류(2.7%)로, 이외 품목은 감소세를 보임
- 2022년 가공식품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스낵류,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펫푸드 순으로 비중이 높음
  - \* 스낵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86.8kg이며, 전년 대비 0.8% 감소함
- 2022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채소류(2.7%)와 펫푸드(4.3%)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감소세 또는 전년 대비 동등 수준의 소비량인 것으로 확인됨

### 1인당 식품 소비량(2018~2022)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률
신선식품	- 낙농품	122.8	122.8	124.2	123.8	123.1	-0.6
	- 채소류	75.8	74.3	73.9	73.1	75.1	2.7
	- 과일 및 견과류	54.5	52.9	52.6	51.8	51.7	-0.2
	- 육류	33.4	33.3	33.2	32.8	32.2	-1.8
	- 유지류	12.3	12.2	12.3	12.2	11.7	-4.1
가공식품	- 스낵류	88.7	88.1	88.3	87.5	86.8	-0.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1.5	51.2	51.4	51.0	50.4	-1.2
	- 펫푸드	38.7	39.2	44.4	44.3	46.2	4.3
	- 편의식품	18.0	17.8	17.9	17.7	17.6	-0.6
	- 소스 및 향신료	14.1	14.0	14.0	13.9	13.9	0.0
	- 스프레드 및 당류	9.3	9.4	9.6	9.9	9.9	0.0
	- 영유아용 식품	1.0	1.0	1.1	1.1	1.1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식품 수출규모는 2,008억 872만 달러(한화 약 263조 594억 원)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함
  -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9.0%로 가장 크며, 한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4.7%로 전체 수출 대상국 중 5위에 해당함
    - \* 2022년 對중국 수출 금액은 382억 4,794만 9,000달러(한화 약 50조 1,048억 원)로 전년 대비 16.4%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42.3%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임
    - \* 뒤이어 캐나다(16.2%), 멕시코(14.3%), 일본(7.3%), 한국(4.7%) 순으로, 對캐나다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9%, 對멕시코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1.8%가 증가함
    - \* 對한국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95억 1,660만 4,000달러(한화 약 12조 4,668억 원)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보임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50,087,538	146,159,157	154,172,236	180,825,663	200,808,720	100.0	11.1	7.5
1 중국	9,339,840	13,912,296	26,488,680	32,865,320	38,247,949	19.0	16.4	42.3
2 캐나다	26,168,659	25,949,244	25,648,975	29,059,493	32,524,518	16.2	11.9	5.6
3 멕시코	19,596,581	19,711,678	18,620,897	25,698,069	28,717,992	14.3	11.8	10.0
4 일본	13,149,737	12,031,143	11,699,374	14,170,577	14,576,174	7.3	2.9	2.6
5 한국	8,524,575	7,788,041	7,752,132	9,365,777	9,516,604	4.7	1.6	2.8
6 대만	3,996,209	3,613,540	3,298,944	3,858,391	4,353,976	2.2	12.8	2.2
7 필리핀	3,070,835	2,989,839	3,200,244	3,549,706	4,052,031	2.0	14.2	7.2
8 콜롬비아	2,983,846	2,778,921	2,856,316	3,379,028	3,719,905	1.9	10.1	5.7
9 베트남	4,128,366	3,575,561	3,375,993	3,466,430	3,541,706	1.8	2.2	-3.8
10 인도네시아	3,115,004	2,869,791	2,820,332	2,896,669	3,266,215	1.6	12.8	1.2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기타, 옥수수 기타, 밀 기타 등 곡류와 냉동/냉장 쇠고기 등 육류가 주를 이룸

- \* 2022년 주요 수출 농식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대두 기타(17.1%)이며, 343억 9,507만 7,000달러(한화 약 45조 576억 원) 규모가 수출되었고 전년 대비 25.5%의 증가율을 보임
- \* 뒤이어 옥수수 기타 품목은 전년과 동등 수준인 187억 4,089만 1,000달러(한화 약 24조 5,506억 원)가 수출되었으며, 5개년 연평균 10.5%의 성장률을 보임
- \* 밀 기타 품목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83억 5,743만 3,000달러(한화 약 10조 9,482억 원)가 수출되었으며, 5개년 연평균 12.0%의 증가율을 보임
- \* 그 외 조제식료품, 대두유 추출 시 발생하는 오일 케이크와 유박, 신선 또는 냉동 상태의 쇠고기가 주로 수출되었으며, 상위 10개 수출 품목 중 아몬드, 조제식료품, 신선 냉장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 <sup>22</sup> )	증감률	
							전년비 ( <sup>21/22</sup> )	연평균 ( <sup>18~22</sup> )
<b>전체</b>	150,087,538	146,159,157	154,172,236	180,825,663	200,808,720	100.0	11.1	7.5
1 대두 기타	17,058,475	18,693,793	25,524,781	27,403,626	34,395,077	17.1	25.5	19.2
2 옥수수 기타	12,572,564	7,773,589	9,306,892	18,749,814	18,740,891	9.3	0.0	10.5
3 밀 기타	5,311,615	6,057,968	6,096,728	7,133,052	8,357,433	4.2	17.2	12.0
4 조제식료품	5,136,485	5,428,778	5,357,505	6,225,450	6,015,844	3.0	-3.4	4.0
5 대두유 추출 유박	3,987,565	3,387,509	3,635,156	4,443,157	5,082,592	2.5	14.4	6.3
6 냉동 쇠고기	2,755,789	2,605,655	2,367,761	3,693,422	4,574,421	2.3	23.9	13.5
7 신선 냉장 쇠고기	3,434,807	3,299,768	3,372,353	4,403,481	4,100,515	2.0	-6.9	4.5
8 절단한 냉동 닭고기	2,639,436	2,655,894	2,783,933	3,384,697	4,023,025	2.0	18.9	11.1
9 박 (양조, 증류)	2,456,004	2,227,849	2,328,819	2,984,979	3,383,308	1.7	13.3	8.3
10 아몬드	3,375,650	3,687,769	3,425,593	3,370,080	3,297,706	1.6	-2.1	-0.6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2,119억 3,554만 5,000달러(한화 약 277조 6,356억 원)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함
  - 對멕시코 수입 비중(21.0%)이 가장 높으며, 캐나다(18.0%), 프랑스(4.1%) 순임
    - \* 2022년 멕시코 농식품의 수입액은 445억 5,418만 3,000달러(한화 약 58조 3,660억 원)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함
    - \* 캐나다 농식품의 수입액은 382억 1,591만 5,000달러(한화 약 50조 628억 원)로 나타나며, 전년 대비 18.4% 증가함
  - 한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14억 5,990만 1,000달러(한화 약 1조 9,125억 원)로, 전년 대비 10.9%, 연평균 16.1%의 증가세를 보이거나 수입 비중은 0.7%에 불과함

###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46,638,304	149,841,428	154,870,198	181,670,333	211,935,545	100.0	16.7	9.6	
1	멕시코	28,567,808	31,274,041	33,988,665	39,117,337	44,554,183	21.0	13.9	11.8
2	캐나다	24,456,802	25,122,034	26,016,139	32,287,738	38,215,915	18.0	18.4	11.8
3	프랑스	6,624,747	6,904,441	6,237,342	7,998,774	8,713,900	4.1	8.9	7.1
4	이탈리아	5,524,974	5,769,261	5,926,708	7,027,145	8,010,179	3.8	14.0	9.7
5	브라질	4,068,730	4,209,106	4,194,969	4,906,189	6,626,804	3.1	35.1	13.0
6	중국	6,171,635	4,420,947	4,391,269	4,971,869	5,962,729	2.8	19.9	-0.9
7	인도네시아	3,115,918	2,865,408	2,969,372	4,470,606	5,854,687	2.8	31.0	17.1
8	태국	3,539,711	3,722,855	4,106,652	4,238,797	5,362,583	2.5	26.5	10.9
9	콜롬비아	2,874,228	2,942,183	2,992,438	3,710,405	4,733,903	2.2	27.6	13.3
10	호주	3,347,587	3,664,305	3,514,424	3,695,237	4,517,437	2.1	22.3	7.8
30	한국	803,206	926,785	1,190,781	1,315,979	1,459,901	0.7	10.9	16.1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수입 상위 품목은 조제식료품, 볶지 않은 커피, 맥주 등임

- \* 조제식료품의 수입액은 전체 수입액의 3.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0억 9,071만 3,000달러(한화 약 10조 5,988억 원)의 수입액을 기록함
- \* 볶지 않은 커피 수입액은 전년 대비 49.1% 증가한 73억 7,139만 2,000달러(한화 약 9조 6,565억 원)이며, 연평균 13.7%의 성장률을 보임
- \*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볶지 않은 커피, 주정음료 기타, 유채유 기타, 빵 기타 품목임
- \* 냉장 쇠고기가 전년도와 유사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46,638,304	149,841,428	154,870,198	181,670,333	211,935,545	100.0	16.7	9.6
1 조제식료품	5,263,280	5,826,461	6,386,648	7,171,392	8,090,713	3.8	12.8	11.3
2 볶지 않은 커피	4,414,278	4,384,263	4,210,140	4,944,882	7,371,392	3.5	49.1	13.7
3 맥주	5,575,433	5,843,851	5,977,170	6,624,655	7,050,111	3.3	6.4	6.0
4 빵 기타	3,608,843	3,934,369	4,212,368	5,126,141	6,477,529	3.1	26.4	15.7
5 주정음료 기타	1,651,251	1,972,337	2,784,295	3,944,287	5,322,991	2.5	35.0	34.0
6 포도주 (2ℓ 이하)	4,773,627	4,706,025	4,209,152	5,008,765	5,165,548	2.4	3.1	2.0
7 신선 냉장 쇠고기	2,465,669	2,838,602	3,001,432	3,960,325	3,956,622	1.9	-0.1	12.6
8 아보카도	2,448,390	2,863,791	2,540,264	3,138,646	3,380,386	1.6	7.7	8.4
9 유채유 기타	1,326,416	1,351,044	1,360,041	2,323,718	3,083,185	1.5	32.7	23.5
10 신선 토마토	2,485,922	2,390,594	2,918,067	2,911,523	2,998,594	1.4	3.0	4.8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한국의 對미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18년 이후 한국 농림 축산 식품의 對미국 수출액은 연평균 10.8%로 성장함
  - 2022년 한국 농림 축산 식품은 12억 843만 3,000달러(한화 약 1조 5,830억 원)가 수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 감소한 규모임
    - \* 농산물의 비중이 84.1%로 가장 높으며, 수출액은 10억 1,581만 9,000달러(한화 약 1조 3,307억 원)로 전년 대비 6.0% 감소하였으나, 최근 5개년 연평균 10.8%의 성장률을 보임
    - \* 축산물(5.8%) 수출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7,004만 1,000달러(한화 약 918억 원), 임산물(10.1%)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억 2,257만 3,000달러(한화 약 1,606억 원)임

### 한국의 對미국 수출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801,981	874,218	1,206,184	1,263,486	1,208,433	100.0	-4.4	10.8
농산물	673,839	739,118	1,036,834	1,080,108	1,015,819	84.1	-6.0	10.8
축산물	42,242	57,949	66,038	70,287	70,041	5.8	-0.3	13.5
임산물	85,900	77,151	103,312	113,091	122,573	10.1	8.4	9.3

\* 출처 :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조미김, 라면, 기타 무알콜 음료, 찌거나 삶은 쌀, 조제식품 기타 제품임
  -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조미김(8.4%)이며, 조미김의 對미국 수출액은 1억 3,728만 5,000달러(한화 약 1,798억 원)로 전년 대비 5.1% 감소함

### 한국의 對미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801,981	874,218	1,206,184	1,263,486	1,208,433	100.0	-4.4	10.8
1 조미김	-	29,936	128,219	144,702	137,285	8.4	-5.1	-
2 라면	50,351	53,543	82,265	81,226	76,161	4.7	-6.2	10.9
3 기타 무알콜 음료	66,588	69,256	72,745	71,134	73,776	4.5	3.7	2.6
4 찌거나 삶은 쌀	10,337	15,497	27,479	35,934	51,797	3.2	44.1	49.6
5 조제식품 기타	24,294	31,511	34,180	42,216	49,722	3.0	17.8	19.6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농식품 수출정보(www.kati.net)

###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FDA 시설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생산·가공·보관업체는 미국 FDA에 시설등록 필수</li> <li>미국 FDA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해외 생산기업의 경우 미국 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li> <li>시설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매 짝수 년도에 갱신할 수 있음</li> </ul>	국내 수출업체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li> </ul>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li> <li>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li> <li>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li> </ul>	국내 수출업체
적하목록 사전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적하목록 제출</li> <li>제출정보 : 화물에 대한 정보, 송하인 및 수하인 인적정보, 운송수단 및 항해에 관한 정보 등</li> </ul>	미국 운송·수입업체
사전신고 (Prior Notice)	<p>[PNSI, 수입식품 사전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식품은 화물 도착 15일 전부터 '수입식품 사전통지(PNSI)' 제출</li> <li>제출정보 : 도착항, 담당자 정보, 수출입업체 정보, 제품 정보 등 [SF, 수입자 보안신고]</li> <li>관세국경보호청에 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 보안신고(SF)' 제출 필요</li> <li>미국 수입업체와 운송업체는 각각 10개, 2개 정보를 제출함</li> </ul>	미국 운송·수입업체
수입물품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착 후 15일 이내 통관자동화시스템(AMS)을 통해 수입물품 신고</li> <li>제출서류 : ① 적하목록 ② 수입신고서 ③ 통관권리증명서 ④ 상업송장 ⑤ 포장명세서 등</li> </ul>	미국 수입업체
수입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FDA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① 현장검사 ② 라벨검사 ③ 샘플검사 실시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현장검사 : ① 서류 및 수입화물 간의 일치 ② 운송·보관 중 발생한 손상 ③ 보관 온도 ④ 부패 여부 등 검사</li> <li>- ② 샘플검사 : 제품의 공중보건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li> <li>- ③ 라벨검사 : 라벨링 규정의 표시 항목 및 요건 준수 여부</li> </ul> </li> </ul>	미국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관세 납부 후 물품을 반출하며, 추후 관세 과부족분을 납부</li> </ul>	미국 수입업체

## 통관 및 검역 제도

### ① 국내 수출통관 절차

#### ▶ 수출 전 준비사항

-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생산·가공·보관업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식품 생산·가공시설 등록(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필수
  - 미 FDA가 운영하는 'FIS(FDA Industry Systems)'을 통해 온라인 등록할 수 있음
  - FIS 홈페이지 URL : [www.access.fda.gov](http://www.access.fda.gov)

#### 미국 FDA 생산·가공시설등록 정보

- |   |
|---|
| ①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
| ② FDA가 인정하는 시설의 고유시설식별번호(UFI) / DUNS Number     |
| ③ 우편 희망 주소(시설의 주소와 다른 경우)                       |
| ④ 모회사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해당하는 경우)                    |
| ⑤ 미국 내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 ⑥ 비상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 ⑦ 시설을 담당하는 소유주 운영자 혹은 에이전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 ⑧ 시설이 사용하는 모든 상표명                               |
| ⑨ 등록 서식에 적혀 있는 해당하는 식품 카테고리                     |
| ⑩ 해당하는 각 식품 카테고리에 대한 시설에서 수행된 활동 유형             |
| ⑪ FDA의 시설 점검을 허가할 것이라는 보증                       |
| ⑫ 제출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자의 기재 권한을 허가한다는 증명서       |

- (등록) 2~4주 소요 / 해외 식품 시설은 미국 대리인(FDA US Agent) 필요 및 미국 대리인의 확인 후 등록됨, 대리인이 FFR 등록신청도 가능
- (갱신) 2년 주기로 갱신 필요(매 짝수년도 10월~12월 갱신가능)
- (수정) 등록의 필수 정보가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에 업데이트 필요
- 산성 및 저산성 식품은 제조시설등록(FCE) 및 제품별 제조공정등록(SID)을 필수적으로 요구

<p>라벨 사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주류 수출업체는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에 주류 제품 라벨의 사전심사 후 라벨승인증서를 취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연방알콜관리법’에 따라, 미국 내 유통·판매되는 와인, 맥주 등의 주류는 라벨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라벨승인증서(Certificate of Label Approval, COLA)’를 취득해야 함</li> <li>- 또한, 주류담배세금무역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벨링 규정에 따라 식품 라벨을 표시해야 함</li> <li>- 라벨승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li> </ul> </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라벨승인증서 취득 시 제출 서류</p>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r><td>① 비용에 대한 보증 채권</td></tr> <tr><td>② 사업자 등록증</td></tr> <tr><td>③ 계약 서류</td></tr> <tr><td>④ 생산공장에 대한 정보</td></tr> <tr><td>⑤ 신청자에 대한 위임서류</td></tr> </table> </div>	① 비용에 대한 보증 채권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계약 서류	④ 생산공장에 대한 정보	⑤ 신청자에 대한 위임서류
① 비용에 대한 보증 채권						
② 사업자 등록증						
③ 계약 서류						
④ 생산공장에 대한 정보						
⑤ 신청자에 대한 위임서류						
<p>품목별 수입요건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 위생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li> </ul> </li> </ul>					
<p>원산지 증명서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수출 시 한-미 FTA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li> <li>-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자율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발급함</li> </ul> </li> </ul>					

▶ 국내 수출통관 절차

<p>수출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회사)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li> <li>-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li> </ul> </li> </ul>
-------------	---

###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미국과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미국으로 △단감 △감귤·한라봉·천혜향 △딸기 △수박 △오이 △참외 △호박 △밤 △배 △사과 (후지) △파프리카 △포도 △토마토 △부리달린 냉이 △당근 등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수출검역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선적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 ② 미국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 미국 수입제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상황에 따라 ① 정식 통관(Formal) ② 약식 통관(Informal) 제도를 운영</li> </ul>	
	수출신고 수리 유형	
	정식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 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정식통관 (Formal Entry)이 요구됨</li> <li>-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됨</li> </ul>
약식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해상 또는 우편 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 중 2,500달러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함</li> <li>- 식품 등 다른 미 정부 기관(미 식품의약국, 농림부 등) 담당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통관이 불가능함</li> </ul>	

### ▶ 미국 수입통관·검역 절차

적하목록 사전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업체는 수입국 도착 전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CBP)에 제출 필수</li> <li>- 화물에 대한 정보(품명, 상세설명, 선하증권 번호, 국제적 위험코드 등),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인적 정보(이름, 주소, 부여된 ID 등), 운송수단 및 항해에 대한 정보(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를 미국 화물전자신고시스템(AMS, Automated Manifest System)을 통해 사전 제출해야 함</li> </ul>								
	미국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								
	<table border="1"> <tr> <td>도로운송</td> <td>도착 2시간 전</td> </tr> <tr> <td>철도운송</td> <td>도착 4시간 전</td> </tr> <tr> <td>해상운송</td> <td>도착 8시간 전</td> </tr> <tr> <td>항공운송</td> <td>도착 4시간 전</td> </tr> </table>	도로운송	도착 2시간 전	철도운송	도착 4시간 전	해상운송	도착 8시간 전	항공운송	도착 4시간 전
도로운송	도착 2시간 전								
철도운송	도착 4시간 전								
해상운송	도착 8시간 전								
항공운송	도착 4시간 전								

<p>수입식품 사전신고 (Prior Not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운송업체·미국 수입업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화물 도착일 15일 이전부터 '수입식품 사전신고'를 해야 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준수해 화물 도착일 15일 이전부터 미국 도착 전까지 수입식품 사전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li> <li>- 미국 FDA의 PNSI(Prior Notice System Interface)을 통해 도착항, 담당자정보, 수출업체 정보, 수입업체 정보, 제품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li> <li>- 예상 도착시간 이전에 제품이 도착항에 도착하는 경우, 사전신고 기한이 경과하거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 또는 수입 거부될 수 있음</li> <li>- 사전신고가 거부되거나 보류된 경우, 거부 또는 보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미국 FDA에 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li> </ul> </li> </ul>																	
<p>수입자 보안 신고 (IS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국 수입업체와 운송업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자 보안 신고 제출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Requirement)에 따라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관세국경보호청에 다음의 정보를 화물 선적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ISF 식품업체 및 운송업체 제출 정보</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수입자 (소유주, 구매자, 관세사, 대리인)</td> <td style="width: 20%;">① 제조사 또는 공급자</td> <td style="width: 20%;">④ 수취인</td> <td style="width: 20%;">⑦ 수입자/FTZ 번호</td> </tr> <tr> <td>② 판매자</td> <td>⑤ 컨테이너 적입장소</td> <td>⑧ 수하인 번호</td> </tr> <tr> <td>③ 구매자</td> <td>⑥ 혼재업자</td> <td>⑨ 원산지</td> </tr> <tr> <td colspan="3">⑩ HS CODE</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운송업체</td> <td colspan="2">① 화물 적재 계획서</td> <td>②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td> </tr> </table>	수입자 (소유주, 구매자, 관세사, 대리인)	① 제조사 또는 공급자	④ 수취인	⑦ 수입자/FTZ 번호	② 판매자	⑤ 컨테이너 적입장소	⑧ 수하인 번호	③ 구매자	⑥ 혼재업자	⑨ 원산지	⑩ HS CODE			운송업체	① 화물 적재 계획서		②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수입자 (소유주, 구매자, 관세사, 대리인)	① 제조사 또는 공급자		④ 수취인	⑦ 수입자/FTZ 번호														
	② 판매자		⑤ 컨테이너 적입장소	⑧ 수하인 번호														
	③ 구매자		⑥ 혼재업자	⑨ 원산지														
	⑩ HS CODE																	
운송업체	① 화물 적재 계획서		②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p>수입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국 수입업체는 도착항 도착 후 15일 이내 통관자동화시스템(AMS)을 통해 수입물품 신고 진행 필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물품 신고시 수입신고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미국 수입물품 신고 제출서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① 적하목록(CBP Form 7533)</td></tr> <tr><td>② 물품신고서(CBP Form 3461)</td></tr> <tr><td>③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td></tr> <tr><td>④ 상업송장(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td></tr> <tr><td>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td></tr> <tr><td>⑥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td></tr> </table>	① 적하목록(CBP Form 7533)	② 물품신고서(CBP Form 3461)	③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④ 상업송장(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⑥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① 적하목록(CBP Form 7533)																		
② 물품신고서(CBP Form 3461)																		
③ 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																		
④ 상업송장(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⑥ 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등																		

- 미국 식품의약국은 수입식품에 대해 ① 현장검사 ② 라벨검사 ③ 샘플검사를 진행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식품의약국에 전달한 수입업체의 사전통지내역 및 수입신고상의 정보를 토대로 식품 수입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함
  - 수입식품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나 규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생산·유통·수입업체의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으로도 수입검사를 실시함

**미국 식품의약국 수입검사 유형**

수입검사	<p style="text-align: center;"><b>현장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서류 및 수입화물간의 일치 ② 운송·보관중 발생한 손상 ③ 보관 온도 ④ 설치류·곤충의 침입 ⑤ 식용색소 등 식품첨가물 기준 준수 ⑥ 부패 ⑦ 수입 서류 상의 의심스러운 사항 및 관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국경검문소·창고·냉장시설 및 컨테이너 등에서 진행됨</li> <li>- 현장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샘플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샘플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적으로 수입식품의 샘플을 수집하며, 제품의 공중보건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식품의약국 실험실에서 정밀분석을 진행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라벨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식품 라벨 상의 정보 및 실제 식품의 일치 여부</li> <li>② 식품명·원산지 등 라벨링 규정의 표시 항목 및 요건 준수 여부를 검사함</li> </ul>

- 농산물, 축산물, 유제품의 검사 및 검역은 미국 농무성(USDA)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관할함
- 미국의 수입업자는 농산물의 수입에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소로부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축산물 수입업자 역시 수입에 앞서 미국 동식물검역소의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육류가공식품의 경우 생산업체 측에서 미국 식품의약국에 생산기지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 유제품 수입 시에도 동물검역소의 허가가 요구됨
- 육류 및 가공류 제품의 안전에 관한 관리와 규제는 미국 농무성 산하의 식품위생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음
- 식품위생검사국에 등록된 국가 및 시설에서 생산된 육류 및 가공류만 미국에 수입이 가능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미국 수입업체는 수입식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 낮은 관세 (평균 약 4.2%)를 부과함
  - 관세 산정에 필요한 상업송장 등의 제반서류 및 납세신고서(CBP Form 7501)를 제출해야 함
  - 수입업체는 추정관세를 선제적으로 납부하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며 추후 확정된 관세액에 따라 초과·부족분을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함
  - 수입업체는 통관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조세, 각종 비용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Bonds)를 관세국경보호청에 제출해야 함
  - 보증서(Bonds)는 일반적으로 미국 재무부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사용함

## FTA 체결현황

### 미국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발효)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멕시코, 모로코, 니카라과, 오만, 파나마, 페루, 싱가포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0.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http://www.fta.go.kr))

###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미 FTA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http://www.fta.go.kr))

## 1. 수출 가능 품목

### • 농산물

- 곡류 : 쌀(백미, 현미, 흑미)
- 과실류 : 감(단감), 감귤(한라봉, 천혜향 포함), 밤, 배, 참다래, 포도, 후지사과
  - \* 수입자는 미국검역당국(APHIS)으로부터 수입허가(Import permit)를 받아야 함
- 채소류 : 가지, 고들빼기, 고추, 근대, 냉이, 딸기(수출가능시기 : 9.15~5.31), 땅콩, 더덕, 도라지, 두릅, 들깨잎, 마늘, 무, 미나리, 상추, 수박, 씩, 생강, 시금치, Yam(양), 양갓냉이, 양파, 연근, 오이, 우영, 참깨잎, 참외, 취나물, 토란, 파프리카, 호박, 호박잎, 토마토, 당근, 가공된 파속(Allium spp.) 식물
  - \* 마늘 : 껍질 벗긴 마늘(peeled clove) 또는 dry bulb만 수출 가능
  - \* 미나리 : 뿌리가 없는 상태의 미나리 잎과 줄기로 상업화물로 수출하여야 함. 식물 검역 증명서 부기사항 확인
  - \* 대부분의 과일 및 채소류는 수입허가서 필요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배추, 브로콜리,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 고추, 토마토 종자 : viroid 및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관련 부기 필요
- 버섯류 : 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영지, 새송이, 양송이, 만가다
- 절화류 : 장미, 카네이션, 심비디움, 호접란, 튜립, 글라디올러스, 백합, 국화
- 묘목, 구근류(재배매체 제거) : 선인장, 호접란, 심비디움, 털란디시아묘, 에케베리아묘
- 각재 등의 제재목 : 목재에 대한 수입허가 필요, 수피제거

### • 축산물

- 우유가 포함된 음료, Beef Extract가 포함된 식품, 계란이 포함된 제품(알가공품), 아이스크림 믹스류, 다시다류(육류 포함/육류 미포함), 삼계탕, 말
- 라면류의 유청분말 성분, 라면류의 계란 성분, 라면류의 우골 추출물 성분, 라면류의 우육 성분
- 과자류의 유당 성분, 과자류의 유청분말 성분
- 반려동물 사료
- 어유 추출물, 양어사료, 게맛살

3)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GJYYQ.do?clear=1>

## 2. 수출 불가능 품목

### • 농산물

- 곡류 : 옥수수, 도토리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배추, 브로콜리, 수삼, 양배추, 곤드레나물, 곰취나물, 머위나물, 삼채, 세발나물, 질경이나물, 비름나물, 케일  
\* 박과작물 중 Ivy gourd(*Coccinia grandis*)는 하와이 수출 불가
- 과실류 : 대추, 복숭아, 살구, 자두
- 화훼묘·분화 : 재배배체에 심겨진 모든 식물
- 묘·묘목류 등 재식용식물 : *Acacia hockii*, *Acaenanovae-zelandiae*, *Actinoscirpus grossus*, *Adonismicrocarpa*, *Andropogon gayanus*, *Artemisia austriaca*, *Austroeupatorium inulifolium*, *Berberis glaucocarpa*, *Berkheyarigida*, *Bidens subalternans*, *Bromus spectinatus*, *Bruguiera gymnorhiza*, *Campuloclinium macrocephalum*, *Carrichtera annua*, *Cassinia arcuata*, *Cestrum laevigatum*, *Cineraria latyformis*, *Cordia curassavica*, *Crassula helmsii*, *Crataegus sinica*, *Cyanotis axillaris*, *Cyperus aromaticus*, *Cyperus bracheilema*, *Cyperus exaltatus*, *Cyperus sflavidus*, *Derris trifoliata*, *Desmostachya bipinnata*, *Digitaria ternata*, *Echinochloa pyramidalis*, *Elatine ambigua*, *Eleocharis kuroguwai*, *Erica arborea*, *Euclea divinorum*, *Fraxinus floribunda*, *Fuirena ciliaris*, *Fumaria schleicheri*, *Gnaphalium affine*, *Gomphrena celosioides*, *Hakea gibbosa*, *Hakea salicifolia*, *Hakea sericea*, *Impatiens parviflora*, *Ipomoea pes-tigridis*, *Isachne globosa*, *Knautia integrifolia*, *Launaea cornuta*, *Limnobiium laevigatum*, *Litsea glutinosa*, *Lonicera acuminata*, *Ludwigia hyssopifolia*, *Ludwigia prostrata*, *Lumnitzera racemosa*, *Luziola subintegra*, *Miscanthus nepalensis*, *Myoporum tenuifolium*, *Nymphoides cristata*, *Ottocloa nodosa*, *Persicaria thunbergii*, *Picnomanacarna*, *Potamogeton distinctus*, *Potamogeton schweinfurthii*, *Praxelis clematidea*, *Rumex sagittatus*, *Sagittaria pygmaea*, *Senecio angulatus*, *Senecioglastifolius*, *Stratiotes aloides*, *Tarhonanthus camphoratus*, *Toxicodendron succedaneum*, *Vachellia hockii*, *Vachellia karroo*, *Wikstroemia indica* 등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H-Mart(미국)
업체 유형	한국식품 수입유통업체, 도매업체
담당자명	Mr. Steve Sohn(영업 및 마케팅 전문가)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공식품으로는 라면 및 면류 즉석식품, 김치, 한국식 바비큐 소스 및 조미료, 김 스낵, 떡볶이, 비빔밥, 김밥 등이 있음
  - 한국산 수입 채소 중에서는 감자, 무, 고추, 버섯 등이 인기가 높으며, 한국산 수입 과일 중에서는 사과, 배, 감, 포도, 사과, 자두, 감귤류의 인기가 높음
  - 미국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산 신선식품 품질이 우수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
  - 인삼이 건강에 좋다는 평판이 생기면서 미국 내 여러 브랜드의 인삼 음료, 인삼 진액, 인삼계탕, 인삼뿌리, 인삼사탕, 인삼캡슐 등 다양한 종류의 인삼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
-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식품 수요 증가 요인
  - 미국 소비자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이 건강식품과 연관되거나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는 점을 들 수 있음. 특히 한국 김치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맛과 풍미가 특색 있다고 여겨짐
  - 미국 내에서 비건 식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 식품 회사에서 이에 발맞춰 채식/비건 요리를 제공한다는 점
  - K-드라마와 K-pop 등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음
- 미국으로 한국산 식품 수출 시 주의사항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신선식품의 수입 절차가 간편하고 쉬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은 없음. 단, 필수 인증이 부족하거나 제품에 표기된 라벨이 부적절할 시에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와 라벨이 올바르게 부착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함

## 1. SPS

### 주요 SPS 내용

-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은 한국산 신선 배(*Pyrus pyrifolia* var. *culta*)의 미국 수입을 위한 병해충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현지 검역을 실시하지 않은 한국산 신선 배 과실도 모든 미국 항만으로 수입이 되도록 허용함
- 식품의 유통추적을 위해 기록보관 의무를 도입할 예정임. 제안된 규정안은 FDA에서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에만 적용이 되며, Food Traceability List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또는 보관하는 이에게 공급망 내에서 추적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 식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시행하여 미국 내 및 수입 식품에 사전 예방 관리를 요구하고 있음. 국내 농산물 및 식품 생산업체는 FDA 실사, 안전성 검증 등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 미국은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2022년 7월 1일부터 전국 수입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 규제를 강화함. 미국은 수입 버섯과 연계된 리스테리아균 발병을 예방하고자 「수입특산버섯 예방전략」을 세워 관리하고 있음
  - 미국은 모든 식품에 대한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사용을 2023년 12월 22일부터 금지함. 그간 사전 승인 식품 또는 일부 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예외 기준을 삭제함
- 한국업체가 미국의 수입 미허가 품목인 메기 매운탕을 조리하는 밀키트 제품을 통관하려는 사례가 수차례 발생하자,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2022년 6월 한국산 메기묵 어류 제품에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하여 수입을 제한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a href="https://www.epingalert.org/">https://www.epingalert.org/</a>
잔류농약 허용치	잔류농약 규격 기준	<a href="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649316ccb17c31211db2edd81f789&amp;mc=true&amp;node=pt40.24.180&amp;rgn=div5">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a3b649316ccb17c31211db2edd81f789&amp;mc=true&amp;node=pt40.24.180&amp;rgn=div5</a>
식품첨가물 허용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a href="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rf/CFRSearch.cfm?CFRPart=182">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cdrh/cfdocs/cfcrf/CFRSearch.cfm?CFRPart=182</a>
미생물 규정 (신선과일 및 채소)	식품별 규격 기준 (품목별 미생물 기준 규정)	<a href="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guide-minimize-microbial-food-safety-hazards-fresh-fruits-and-vegetables">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guidance-industry-guide-minimize-microbial-food-safety-hazards-fresh-fruits-and-vegetables</a>

##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 부분경화유(트랜스 지방) 사용 완전 금지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은 모든 식품에 대한 부분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 oils, PHOs) 사용을 2023년 12월 22일부터 금지함. 그간 사전 승인 식품 또는 일부 식품에 부분경화유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예외 기준을 삭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참치 통조림과 땅콩버터</li> <li>2. 청어유(menhaden oils)와 유채씨유(rapeseed oils)</li> <li>3. 경화(hydrogenerated) 어유</li> <li>4.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rolls), 번(buns)</li> </ol> </li> </ul> </li> <li>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기업은 규칙의 내용과 시행 일정 확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참치 통조림과 땅콩버터, 마가린과 쇼트닝, 빵, 롤, 번 제품과 수출 식품의 성분 및 포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청어유와 유채씨유, 경화 어유에 부분경화유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트랜스지방과 함께 부분경화유를 규제하기 위한 국가별 조치가 꾸준히 강화되고 있음</li> </ul> </li> </ul>
통보일	2022.07.01
시행예정일	2023.12.22
개정현황	-
출처	<a href="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Id=NTB0203633">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Id=NTB0203633</a>

## 2. TBT

### 주요 TBT 내용

-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식품 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최초 1회 등록 후 2년마다 등록 갱신이 필요함. 등록은 식품 제조, 가공, 포장, 보관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하며, 산성화 및 저산성식품은 기본 시설등록 이외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요구됨
- 2021년 식품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참깨가 추가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참깨 함유 제품에는“참깨 포함”이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행되는 식품 라벨링 규정의 통일된 규정 준수일은 2026년 1월 1일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발행되는 새로운 육류 및 가공육 제품 표시 규정은 2026년 1월 1일에 일괄 통일하여 실행됨
  - 2022년 10월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1파운드 또는 1파인트 이상 4파운드 또는 1갤런 미만의 육류 또는 가공육 제품 라벨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측정 단위로 순중량·순함량을 표시하도록 요구했던 종전의 조항을 개정하여, 둘 이상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중량·함량을 이중 표시할 필요가 없어짐
  - 2023년 3월 20일부터 FSIS는 심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된 육류, 가공육 및 달걀 제품의 승인된 라벨은 평가하지 않음
- 미국은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시행함
  - 미네소타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식품 포장의 PFAS 사용 규제 조치를 발표함
  - ‘식품 내 아크릴아미드 경고(발의안 65 제6조)’를 통해 새로운 세이프 하버 경고를 채택하는 섹션을 추가함
- 미국 농무부(USDA)는 매년 미국 유기농표준위원회(NOSB)가 제출한 유기농 규정의 허용물질 및 금지물질 목록을 반영하여 국가 목록을 개정함
  - 2023년 12월 USDA는 생명공학(BE) 식품 목록에 사탕수수를 추가하고 스쿼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BE 식품 공개 표준을 업데이트함
- 농업마케팅서비스(AMS)는 가공 건포도 등급에 관한 표준을 개정함. 표준을 현대화하기 위해 표준 내 캡스텨(Capstem) 허용치에 대한 참조 기준을 개정함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a href="https://www.epingalert.org/">https://www.epingalert.org/</a>
식품 라벨링 규정	미국 식품의약국(FDA)	<a href="https://www.fda.gov/files/food/published/Food-Labeling-Guide-%28PDF%29.pdf">https://www.fda.gov/files/food/published/Food-Labeling-Guide-%28PDF%29.pdf</a>
주요 인증 사이트	IFANCA 인증 Non-GMO 인증 미국 농무부 산하 마케팅지원청 (USDA Organic 인증)	<a href="https://www.ifanca.org/">https://www.ifanca.org/</a> <a href="https://www.nongmoproject.org/">https://www.nongmoproject.org/</a> <a href="https://www.ams.usda.gov">https://www.ams.usda.gov</a>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명</li> <li>• 용량</li> <li>• 원산지/원료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레르기 정보</li> <li>• 성분정보</li> <li>• 1회 제공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주의 문구 (건강 유의 사항에 관한 문구 등)</li> <li>• 제조업체 정보</li> </ul>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외국어 표기도 가능하나 모든 필수정보는 동시에 영어로도 표기되어야 함		
	용량	• 주 표시면 30% 하단에 위치		
		• 영미 파운드법(oz, lb, quart)에 따라 표기되어야 하며, 분수 또는 소수점 등의 표기도 허용		
		• 국제단위(g, kg, L 등 미터법)도 함께 표기		
		• 고체 제품의 경우 'Net Weight'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액체 등의 제품은 'Net Contents' 또는 'Net' 등의 단어 사용은 선택 사항		
		• 용량은 순중량으로만 나타내야 함		
	제품명	•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품의 일반명(Statement of identity)		
		• 제품의 전면에 표기되어야 하며, 최소한 가장 큰 라벨 면에서 1/2만큼을 차지하도록 표기되어야 함		
		• 바닥과 평행하게 작성되어야 함		
		• 식품이 액체가 아닌 경우 형태(Sliced, Unsliced, Halves) 등을 명시		
• 주스(과일 및 채소) 음료의 경우 주스 함유량(%) 표기 필요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원료 정보	• 중량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나열
		• 전체 제품 용량 및 무게의 2% 이하를 구성하는 성분의 표기는 위 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 하위 구성 요소의 경우 괄호 안에 넣음, 그 자체로 2개 이상의 원료를 함유하는 복합원재료는 육류검사법/기금류제품검사법/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규정된 정의 제품명 표준에 따라 표기함
		• 허가된 방부제 첨가 시 방부제의 통상 명칭 및 기능을 표기할 것
		• 공인된 색소는 약어 또는 특정 이름 사용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원산지	• 식품의약품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지 않으나, 미국 세관과 관세국경 보호청은 원산지 표시를 요구함
		• 미국 내 유통업체의 명칭과 주소 근처에 영어로 표기할 것
	성분정보	•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라벨에 영양성분표를 포함해야 함
		• 열량, 총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D, 칼슘, 철분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
		• 4살 이상이 한번에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양을 표기하는 1회 섭취량이 포함되어야 함
		• 영양성분표에 표준 1회 섭취량에 대한 영양정보와 실제 해당 유닛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 정보를 기존 영양성분표 오른쪽에 추가하여 표기해야 함
		• 일일섭취량을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DV)를 표기해야 함
		• 수출용 제품 라벨의 면적에 따라 영양성분표의 규정된 위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알레르기 정보	• 영양성분표의 포맷이 다양하므로 제품의 크기나 라벨의 면적에 따라 적합한 포맷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 주요 알레르기원은 다음과 같은 9가지 항목임
		• 우유, 달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대두, 밀, 참깨
		• 견과류의 경우 정확한 종류가 표기되어야 하며, 생선 또는 갑각류 동물의 경우 정확한 종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함
		• Contains의 C는 반드시 대문자로 기재
	제조사, 포장업체, 유통업체의 정보, 이름 및 주소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을 표기
		• 제조사, 포장업체 또는 유통업체 표기는 일반적으로 정확한 도로 이름 및 번호, 도시, zip(Zip)코드, 주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제조업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과 관련된 업체명을 반드시 기재		

\* 자료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식이 보충제 라벨 표기 사항

필수 표기	식별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이보충제, 철분보충제, 허브보충제와 같이 식이 보충제 제품 식별 문구</li> </ul>
	제조사 및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 중량 및 제품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제조업체, 포장 또는 유통업체의 이름과 미국 내 사업장 주소 표기, 수입 제품의 경우 원재료와 제품 원산지 표기</li> </ul>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성분은 '보충성분정보' 또는 '기타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충성분정보'는 1회 제공량과 용기당 1회 제공량, 그리고 식이 보충 성분의 정보 표기, '기타성분'에는 식이 보충 성분의 출처, 식품 색소 및 첨가물 등</li> </ul> </li> </ul>
강조표시 (claims) 표기기준	건강 강조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함 (FDA 라벨링 지침 부록C)</li> </ul>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 및 기능 강조표시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문구가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을 처음 판매한 후 30일 이내 사용한 표시 문구를 FDA에 통지( FDA 규정 21 CFR 101.93)</li> </ul>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함유(free)', '고함량(high)', '더많은(more)', '줄어든(reduced)' 등 함유된 영양 성분의 함량 강조표시는 규정된 문구만 사용할 수 있음( FDA 규정 21 CFR 101(식품 라벨링)의 하위 조항 D)</li> </ul>

\* 자료 :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식이 보충제의 라벨링 지침(Dietary Supplement Labeling Guide)

\* 참고 : 미국 FDA 식이보충제 성분 DB(Information on Select Dietary Supplement Ingredients and Other Substances)

• 잼류

라벨링 사진



표기 항목	표기 내용	
명칭	SKIPPY	
원재료명	구운 땅콩, 설탕, 수소화 식물성 기름(목화씨, 콩, 유채), 소금	
내용량	1,134g	
유통기한	2024년 9월 24일	
보관 방법	직사광선을 받지 아니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단, 개봉 후에는 냉장보관)	
제조사	Skippy Foods	
유통업체	Hormel Foods Sales LLC, 1 Hormel Place, Austin, MN 55912	
영양성분표시	용기당 14 인분 2 큰술 제공량(32g) 기준	
	<b>열량</b>	190
	<b>총 지방 16g</b>	21%
	포화지방 3g	
	트랜스지방 0g	
	<b>콜레스테롤 0mg</b>	0%
	<b>나트륨 150mg</b>	7%
	<b>총 탄수화물 6g</b>	2%
	식이섬유 2g	7%
	총 설탕량 3g	
	첨가당 2g 포함	4%
	<b>단백질 7g</b>	7%
	비타민 D 0mcg 0%	칼슘 0mg 0%
	철분 0.4mg 2%	칼륨 90mg 2%
비타민 E 1.5mg 10%	니아신 3.2mg 20%	
알레르겐 주의 성분	땅콩	

• 간장

라벨링 사진



표기 항목	표기 내용		
명칭	키코만 저염 간장		
원재료명	물 대두 밀 소금 젖산 소듐 벤조에이트(보존제로서 1/10 이하 함유)		
원산지	미국		
제조사	키코만 푸드(KIKKOMAN FOODS INC.)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 밀		
내용량	20 FL OZ(591ml)		
저장방법	개봉 후 냉장보관		
영양성분표시	1회 제공량 1큰술(10ml) 총 39회 제공량		
	에너지	10kcal	%DV
	지방	0g	0%
	나트륨	590mg	26%
	총 탄수화물	1g	0%
단백질	1g	-	
	본 제품은 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식이 섬유, 총 당류, 첨가당류, 비타민 D, 칼슘, 철분 및 칼륨의 원천이 아닙니다.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		

## 인증

### [ 필수 인증 ]

#### • 미국 FDA 등록

- 식품 또는 사료를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국내의 시설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FDA에 FFR(식품시설등록)을 진행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2020년 10월 1일부터 FFR 신청 시 '국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통용되는 DUNS number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외 식품시설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함. 단, FFR은 시설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FDA의 로고 또는 FDA 승인, 허가, 인증의 문구를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FDA 등록이 필요한 식품으로는 식품·동물사료·식품첨가물·저산성식품·산성화 식품 등이 있음
- 산성화 식품(AF)과 저산성 식품(LACF)의 경우,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별도로 FDA에 FCE(식품시설등록)과 SID(공정등록)을 해야 함

인증명	미국 FDA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식품의약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강제유무	필수	
제출 서류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제품 상세정보, 원재료 세부 목록, 위생관련 정보, 기타 인증 취득정보 등 현장실 사용 별도 제출 서류 :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제품별 공정흐름도, 품질 관련 인증서 사본, 제조 관련 기록물, 공급원 목록 및 공급내역,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모든 설비의 명칭 및 수량 정보 등	
비용	없음	
유효기간	2년(최초 1회 등록 후 2년마다 갱신 필요)	
절차	시스템 로그인 및 시설등록 페이지 접속 → 식품시설정보 기재 → 미국 대리인 검증 → 등록 정보 검증 → 등록 확인 및 등록번호 발급	

## [ 선택 인증 ]

### • USDA Organic 인증

- 미국 유기농인증(USDA Organic)은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 유제품, 축산물, 수산물 등에 발급되는 인증임. 유기농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 원료 함유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디자인에 차이가 있음. 2014년 7월 발효된 「한·미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 별도 획득 없이도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입이 가능함
- 2023.1월, 미국 USDA는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의 강화 계획을 밝힘.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에 대해 NOP 수입 증명서가 사용됨

인증명	USDA Organic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미국 농무부(USDA)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인 정보, 제품 정보, 이전에 신청한 모든 유기인증제 정보, 최근 3년 간 재배 등에 사용한 화학물질 이력, 유기농 생산 또는 시스템 계획서	
비용	최초 신청 시 품목당 800달러(현장실사비용 별도)	
소요기간	약 6~10주	
절차	USDA 공인인증기관 검색 → 인증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서류심사 → 현장실사 실시 → 조사결과 종합 및 인증서 발급	

### • IFANCA 할랄 인증

- 할랄 식품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할랄 표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인증을 통해 식품이 할랄의 준비 및 성분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증명함. IFANCA(미국 이슬람식품영양협의회, Islamic Food And Nutrition Council of America) 인증은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할랄 인증으로, IFANCA는 국제적으로 주요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이며 65개국에서 통용됨. IFANCA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이슬람 식품 기준 부합, 모든 서류요건 충족, 할랄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할랄 식재료만 사용, 식재료 준비나 생산가공, 포장, 보관, 저장, 운반 등의 모든 단계에서 하람 식품 제외, 이슬람 방식의 청결 및 위생 절차 준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인증명	코셔(Kosher)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Star-K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신청서(업체명, 주소, 연락처, 코셔 인증 여부 등)		
비용	취득비	400만~1,000만 원	
	대행비	1,000만 원 이상	
	컨설팅비	약 3,000~5,000 달러	
소요기간	3개월~6개월		
절차	신청서 제출 → 추가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비용 산정 → 시설 심사 → 계약 → 인증서 발급		

• 글루텐프리 인증

- 서유럽·북미·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셀리악(Celiac disease, 밀가루 알레르기) 환자 비중이 높아지며 글루텐프리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글루텐프리 식품 라벨링 최종 규칙을 발효하였으나 제조업체의 자발적 준수 규정이며, GFCO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인증명	글루텐프리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Gluten-Free Certification Organization(GFCO)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현재 제품 및 성분 목록, 조직도, 직업 세부설명, 구매 문서, 승인된 공급업체 목록, 글루텐에 대한 공급업체 명세서, 교육자료(직원 교육 기록), 검사 확인 문서, 글루텐 위험 분석, 포장/라벨 점검 문서, 전년 시정 조치 보고서		
비용	품목당 약 180만 원		
소요기간	약 6~18주		
절차	제조공장 등록 → 인증기관 확인 → 인증 신청 → 신청서 검토 후 견적 → 견적승인 및 수수료 납부 → 공장실사 실시 → 감사보고서 수령 → 부적합 사항 시정 → 인증 결정		

• NON-GMO 인증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회피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Non-GMO 라벨링이 중요한 마케팅요인 중 하나임. 유전자변형 식품은 유전자변형 정도에 따라 추적관찰 위험군, 저위험군, 고위험군의 3단계 위험 수준으로 구분됨. Non-GMO 인증은 완제품의 0.9~5% 수준까지 유전자변형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인증명	NON-GMO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Non-GMO Project	
강제유무	선택	
제출 서류	송장, 구매 증명서, 시설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 제품에 대한 기본정보 및 재료와 시설의 수, 라이선스 계약서, 원료 리스트, 생산 설비 정보, 검사결과 등, 재료 분석 증명서	
비용	제품당 약 200만~500만 원	
소요기간	3개월~6개월	
절차	기술관리기관(TA) 선택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서류 검토 → 사전평가 및 견적 → 현장심사 → 라이선스 계약 체결 → 인증마크 부여	

### 3. 통관거부사례 현황

####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3년 미국에서 확인된 한국산 식품 통관거부 사례는 총 140건으로, 2021년부터 2023년 까지 미국에서 확인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의 총 건수는 380건으로 집계됨. 사유별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라벨링/포장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남

2021~23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라벨링/포장	76	33	42	151
성분 부적합	8	25	50	83
위생	40	23	16	79
서류미비	5	4	22	31
잔류농약 검출	4	4	5	13
기타	9	9	5	23
합계	142	98	140	380

#### 2023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3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는 한 개 문제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사유가 확인된 복합 문제사례를 포함하면 총 207건이며, 라벨링/포장(96건), 성분 부적합(57건)으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 수치가 특히 높게 나타남

2023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5	3	4	12	21	10	3	1	11	4	12	10	96
성분 부적합	40	1	3	4	1	0	0	0	1	1	3	3	57
위생	3	1	1	0	4	3	3	2	0	0	0	4	21
서류미비	0	0	1	1	5	0	0	4	0	12	0	0	23
잔류농약 검출	3	0	0	1	0	0	1	0	0	0	0	0	5
기타	2	0	2	1	0	0	0	0	0	0	0	0	5
합계	53	5	11	19	31	13	7	7	12	17	15	17	207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라벨링/포장	필수 라벨 정보가 영어로 표기되지 않음	28
	각 성분의 통칭 또는 관용명 미표기	16
	라벨링 정보 오기 또는 허위 표기	2
	사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1
	제품 라벨에 필수 기재사항인 영양소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18
	주요 알레르겐 미표기	5
	성분, 중량 미표기	1
	내용물의 정확한 수량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12
	라벨 정보가 눈에 띄지 않아 소비자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움	4
	미승인 영양소 및 건강 정보 표기	3
	식이보조제 문구 제외로 제품 종류 확인 불가	2
	인공 색소 성분 미표기	3
위생	수출업자 주소지 및 연락처 미표기	1
	독성물질 리스테리아균 또는 살모넬라균 검출	14
성분 부적합	제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 가공 및 포장됨	7
	독성물질/독성물질(납) 검출	43
	승인받지 못한 식약 포함	6
잔류농약 검출	유해 색소 함유	8
	살충제 화학물질 검출	5
서류미비	규정에 따른 조건 하에 제조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미제출	23
기타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FSVP)관련 조항 위반	2
	부패하여 식품으로 부적합	2
	제조업체가 저산 통조림식품이나 산화 식품제조 업체로 등록되지 않음	1
합계		207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과자류	46	22.2	라벨 표시 오류
	기타조제 농산품	26	12.6	필수 라벨 정보 미표기
	버섯류(농산물)	14	6.8	리스테리아균 검출
	기타곡실류	12	5.8	라벨 표시 오류
	인삼류	12	5.8	비위생적 제조
	채소류	9	4.3	살충제 검출
	면류	3	1.4	서류 미비
	소스류	1	0.5	영어로 라벨 표시 안됨
소 계		123	59.4	
수산물	해조류	41	19.8	독성물질 검출
	어류	25	12.1	서류미비
	연체동물	13	6.3	라벨 표시 오류
	기타수산동물	1	0.5	라벨 표시 오류
	수산 부산물	1	0.5	리스테리아균 검출
소 계		81	39.1	
임산물	버섯류(임산물)	3	1.5	외국인 공급자 증명 프로그램 조항 위반
소 계		3	1.5	
총 합 계		207	100.0	



No.	제목	FSVP 프로그램 내의 HACCP 기준 적용	해당국가	미국
			관련품목	식품
			유형*	식품안전
2	주요 내용	<p>(1) FSVP 프로그램 설명 및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월 미국 FDA는 수입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FSVP(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관한 최종 지침을 확정해 통지함</li> <li>- FSVP는 미국 수입업체에게 수입 식품이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제품인지 검증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미국 수입업체는 반드시 해외 제조사와 공급업체가 미국 FDA 표준의 식품 안전성 규제 조건을 준수하며 식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함</li> <li>- 수입업체는 식품의 위해요소 분석, 식품 위험성 및 공급업체의 관리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 인증, 모니터링 및 교정 조치 등을 시행해야 함</li> <li>- 수입업체가 FSVP를 위반하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출업체 제품에 대한 통관 거부, 경고 조치, 수입 경보 리스트 게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체가 수입 경보 해제를 받거나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변경해야 함</li> <li>- 2021년부터 FDA는 FSVP 준수 여부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수입 거절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li> </ul> <p>(2) FSVP 프로그램과 HACCP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SVP 규정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식품(21 CFR 1.500에서 정의)에 적용되며, 21 CFR 1.501에 따라 FSVP 규정에서 면제되는 수입 식품 카테고리에는 다음과 같음</li> <li>- ▲FDA의 HACCP 규정이 적용되고 이를 준수하는 주스, 생선 및 수산물과 HACCP 규정이 적용되는 주스, 생선 및 수산물에 사용되는 특정 성분</li> <li>- ▲연구 및 평가용 식품, 개인 소비용 식품, ▲알코올 음료 및 그에 사용되는 특정 성분, ▲가공 및 향후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 ▲야채 통조림 등 저산성 통조림 식품(LACF) 및 그에 사용되는 특정 성분, ▲수입 당시 미국 농무부의 규제를 받는 특정 육류, 가금류 및 계란 제품</li> <li>- 모든 수입식품은 반입 과정에서 추가적인 데이터 코드를 입력해야 함. 주스 및 수산물 제품 수입업자들은 FSVP 규제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FSX(식품이 FSVP 규제로부터 면제되었거나 FSVP 규제를 준수할 의무가 없음)' 코드를 제출해야 함. 코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식품 반입이 거절됨</li> </ul>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물을 수출을 위한 FSVP 서류 제출 시 적용되는 HACCP 기준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li> </ul>		
	기타	<p>※ 미국 FDA에서 통지한 FSVP 관련 지침 및 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SVP 주요 요구사항 지침 : <a href="https://www.fda.gov/media/94746/download?attachment">https://www.fda.gov/media/94746/download?attachment</a></li> <li>- FSVP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 : <a href="https://www.fda.gov/media/118241/download">https://www.fda.gov/media/118241/download</a></li> <li>- FSVP 기록 제출을 위한 수입업체 포털 : <a href="https://www.access.fda.gov/">https://www.access.fda.gov/</a></li> </ul>		

No.			해당국가	미국
3	제목	식품 색소 첨가물 규제	관련품목	식품 첨가물
			유형*	SPS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FDA는 색소 관련 규정에 대해 엄격한 편임. 제품에 사용되는 색소는 FDA의 사전허가를 받은 색소여야 하며, 일부 고위험 색소의 경우 배치 인증 (Batch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DA 시행령을 통해 색소 성분이 사전 허가를 받은 성분인지 판단해야 하며, 사전허가를 받은 색소라 하더라도, 세부적 조건들이 상이하게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에 표기된 사용 및 제조 조건의 범주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함</li> <li>- 사전 허가를 받은 성분임을 확인했다면, 배치 인증이 필요한 색소인지 판단해야 함</li> </ul> </li> <li>• 모든 색소의 이름은 FDA 라벨 표기 규정에 맞춰 제품에 표기해야 함. 규정에 맞는 색소가 사용되었더라도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허위표기(Misbranding)로 FDA 규제 위반에 해당됨</li> <li>•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들은 FDA 규정의 부정불량(Adulteration)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게 되며, 수입이 거절되거나 수입 금지령에 올려질 수 있음</li> <li>• 미허가 색소 사용으로 제품 수입이 거절된다면, 추후 제품들을 수출 및 수입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색소 수입금지령(Import Alert)에 등재될 경우 제품이 수입될 때마다 매년 민간 실험실에 제품 샘플을 보내 위반 색소 포함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FDA에 제출하여 해당 제품이 색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li> </ul> </li> <li>• 치자 황색소(Gardenia Yellow)는 한국 식품들에 많이 사용되지만 미국 FDA에서 허가하지 않아 미국에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사전 허가를 받은 다른 황색 색소를 사용해야 함</li> </ul>		
애로·건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소 규제가 엄격하며, 치자황색소나 락색소 등의 성분이 첨가된 제품에 대한 색소 변경 요청으로 인해 수출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색소첨가물 규제 현황  <a href="https://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ColorAdditives&amp;sort=Sort_Unique_ID&amp;order=ASC&amp;startrow=1&amp;type=column&amp;search=Use-current%C2%A4VARCHAR%C2%A4foods">https://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ColorAdditives&amp;sort=Sort_Unique_ID&amp;order=ASC&amp;startrow=1&amp;type=column&amp;search=Use-current%C2%A4VARCHAR%C2%A4foods</a> </li> <li>※ FDA가 현재 검토 중이거나 제출되었지만 보류 중인 식품첨가물 목록  <a href="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FAP-CAP">https://www.cfsanappsexternal.fda.gov/scripts/fdcc/?set=FAP-CAP</a> </li> <li>※ 인증면제되는 색소 첨가제 목록(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Parts 73)  <a href="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A/part-73?toc=1">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A/part-73?toc=1</a> </li> </ul>		

## 05

## 현지화 자문보고서

## 1. 식물성 대체육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포장재 인증 필요 여부
- 대체육의 관세 등 통관 절차
- 라벨링 관련 사항

## 자문 내용

## • 관세번호 및 관세율

부류	제품	식품규격기준	HS CODE	관세율	비고
-	2106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품 2106.90 - 기타	-	2106.90.9995	6.4%	

- 본 품목과 대체육 제품의 밀키트는 2106.90.9997, 1902.20.0040, HTSUS로도 분류될 수 있으나, 코드에 상관없이 일반관세는 모두 6.4%이며 한미 FTA 무관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음

## • 포장재 인증 필요 여부

- FDA는 식품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이전에 해당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 용기를 승인하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않음
- 단, 원재료와 식품 접촉 성분은 FDA 관련 규정 하에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물질이거나, FDA에서 식품 첨가물로 식품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물질이거나, 1958년 6월 이전에 식품에 특정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물질이어야 함
- 종이 포장재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등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주범으로 금지한 주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에 접촉하는 성분으로 사용이 허가된 식품 첨가물 연방 규정 목록: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s 173, 175-178, 179.45, 180.22, 181, 186 또는 GRAS 목록 등

- 미국 수출 사전 통관 준비 요소

- 미국 수출 시에는 식품 제품 안전성, 제조 시설 위생 및 안전성, 제품 라벨링, FDA 등록 필요 여부, 통관 절차 서류 등의 사안에 대해 관련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
- 식품 제조 시설은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하에 '식품 예방적 방제 규정'을 준수해야 함.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의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예방 관리를 다룬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식품안전계획'을 서면으로 구비하고 운영해야 함
-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을 제조, 처리, 포장, 보관하는 국내의 모든 시설은 수출 이전 FDA에 식품제조시설로 등록(FDA Food Facility Registration)해야 함.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미국에 상주하는 US Agent를 필요로 함
- 수입자는 FSMA 하에 시행되는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제품의 수입이 거부되어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음

- 식물성 대체육 제품의 라벨링

- 연방법은 'meat', 'burger', 'sausage'와 같은 용어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품의 라벨링에 misrepresentation & misleading을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규정만 존재함
- 반면 여러 주들이 해당 표기를 육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미주리, 조지아, 텍사스 주는 식물성 대체육 제품의 라벨에 식물 기반이라는 표기를 명시하도록 함
- 따라서, 본 제품 포장재에는 제품이 전통적인 개념의 육류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식물성 성분에서 유래한 것임을 분명히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기타 라벨링 관련 사항

- 제품의 전면부에는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해당 제품군의 특성을 나타내는 'Statement of Identity'와 순증량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순증량은 제품 전면부 하단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체 전면부 높이의 하단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표기하고, 미터법과 미국의 도량 단위가 함께 표시되어야 함
- 제품명을 음각으로 표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임
  - \* 삼각이나 원형 포장의 경우 제품 용기 상단 전체가 전면부이며, 제품 용기가 육면체가 아니고 원통형 또는 거의 원통과 유사한 다른 형태의 용기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면적의 40% 내에 전면 표기 부분이 표기해야 하는 필수 표기들이 위치함

## 발효효소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라벨 검토
- SF 제작

## 자문 내용

- 품목 분류 : 식이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
- 주표시면 라벨링 기준
  - 주표시면(PDP, Principal Display Panel)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정보를 확인하는 면으로, State of Identity와 총 순중량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읽는데 불편을 주는 광고성 요소나 바코드는 표기할 수 없음
  - State of Identity는 PDP에서 가장 큰 글자의 반 이상으로 진하게 표시해야 하며, 식이보조 식품의 경우 해당 표기 아래 “Dietary Supplement”를 표시함
  - 순중량은 하단 30%(1/3) 위치에 바닥면과 평행하게 기재하고, 순중량 표기 주위에 순중량 글자 크기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
  - 본 제품은 외부 패키지의 순중량 표기를 ‘30 - 0.14 oz(4g) STICKS/NET WT. 4.23 oz(120g)’로, 날개 패키지의 순중량 표기는 ‘Net Wt. 0.14 oz(4g)’로 변경해야 함
  - 순중량의 최소 글자 크기는 하단 표의 기준을 따름

최소활자크기	PDP 면적
1/16 in(1.6mm) Font size 4.5 pt	32cm <sup>2</sup> 이하
1/8 in(3.2mm) Font size 9 pt	32cm <sup>2</sup> 초과 161cm <sup>2</sup> 미만
3/16 in(4.8 mm) Font size 13.5 pt	161cm <sup>2</sup> 초과 645cm <sup>2</sup> 미만
1/4 in(6.4 mm) Font size 18 pt	645cm <sup>2</sup> 이하 2,580cm <sup>2</sup> 미만
1/2 in(12.7 mm) Font size 36 pt	2,580cm <sup>2</sup> 이상

- 정보표시면 라벨링 기준

- 정보표시면(IP, Information Panel)은 PDP 바로 옆에 위치한 면으로 크기가 작을 경우 그 옆면(PDP의 반대편)까지 정보를 기재함
- IP에는 영양성분표, 원료, 알레르겐, 사업장 이름과 주소, 원산지, 미국 내 주소 기재, 경고문구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각 정보 사이에 방해 문구나 그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영양성분표

- 식이보조식품의 영양성분표에는 “0”인 영양 성분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음

- 원료

- 영양성분표 하단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재하며 중량은 내림차순으로 표시함

- 알러젠

- 미국에서는 Milk, Egg, Fish, Crustacean Shellfish, Tree nuts, Peanuts, Wheat, Soybeans, Sesame의 9가지 알러젠 성분을 표시해야 하며 Fish, Crustacean Shellfish, Tree nuts은 그 종류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제품은 Soy, Milk, Wheat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Contains Soy, Milk and Wheat’로 기재해야 함
- 교차오염의 경우, 미국의 필수 알러젠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만“Manufactured in a facility that also processes Egg, Crustacean Fish(Crab, Shrimp), Peanut and Tree nuts(Walnut).”와 같이 작성해야 하며, 한국 식약처 기준 교차오염 문구는 Mislabeling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유통업체 또는 제조사의 정보를 원료와 알러젠 정보 하단에 기재함
- 기재 시“Manufactured for 유통 업체명 또는 제조 업체명(영어로), 도로명 주소(영어로)(우편 번호)”와 같이 기재함

- 원산지

- 한국에서 생산되었다면 “Product of South Korea”로 기재함

- 미국 내 주소 기재
  - 식이보조식품의 경우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수입자가 있다면 수입자 정보를 기재하고, 없다면 1-800 toll free number을 생성하여 기재함
- Claim 사용
  - 치료, 예방 관련 문구는 사용이 금지되나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주장은 사용 가능하며, “\* \*” 표시 뒤 굵은 글씨체로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의 면책문구를 표기해야 함
  - HACCP 마크는 미국 기준과 상이하므로 삭제 권고
- 기타 라벨링 사항
  - 날개 패키지에 “This unit not labeled for retail sale”이라는 문구 표기 시, 날개 패키지에 영양성분표, 원료, 사업자 정보 표기를 생략할 수 있음
  - 유통기한은 필수 표기 사항이 아님

